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(안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97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5.

발 의 자 : 안상훈 · 김성원 · 백종현
김 건 · 윤재옥 · 이만희
고동진 · 박덕흠 · 김은혜
이종배 · 박성훈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포함한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.

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·운영되고 있어 의료인은 현행 취업제한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음. 그런데 해당 기관은 의료행위 외에도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, 상담, 사례관리 등 장애인과 직접 대면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의료인이 아닌 종사자에 대하여는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장애인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. 또한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에 따른 장애아동지원센터 역시 장애아동 및 그 가족과 밀접하게 접촉하여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지만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있지 않음.

이에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
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에 따른
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
에 추가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
것임(안 제59조의3제1항제7호 및 제14호).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3제1항제7호 중 “제21조제3항”을 “제8조의 중앙장애아동지원 센터, 같은 법 제9조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, 같은 법 제21조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. 다만, 대표자 및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에 한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범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 “취업 제한명령”이라 한다)을 장애인 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(이하 “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등”이라 한다)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~ 6. (생략)
7.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21조제3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

8. ~ 13. (생략)

[illegible]

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-----
--제8조의 중앙장애아동지원
센터, 같은 법 제9조의 지역
장애아동지원센터, 같은 법
제21조제3항-----

8. ~ 13. (현행과 같음)

<u><신 설></u> ② ~ ⑬ (생 략)	<u>14.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. 다만, 대표자 및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에 한정한다.</u> ② ~ ⑬ (현행과 같음)
--	--